

---

# 신·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

---

2021. 8.



산업통상자원부



한국에너지공단  
신·재생에너지센터

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은 「신·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·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을 기본으로 하며, 동 가이드라인은 집적화단지를 추진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
동 가이드라인은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정·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 목 차

1. 집적화단지 개요 .....	1
2. 집적화단지 요건 .....	3
3.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평가 .....	5
4. 집적화단지 운영 .....	8
5. 민관협의회 구성 · 운영 .....	9
[참고]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세부 평가기준 .....	14
[서식] 민관협의회 회의록 .....	15

# 1. 집적화단지 개요

## □ 집적화단지 개념 및 대상

- 지방자치단체(실시기관) 주도로 입지발굴,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·환경성을 확보하여 40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구역

\* 지방자치단체 :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1항에 따른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, 시, 군, 구(자치구)

- 집적화단지 내에 1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이 때 각 발전사업의 용량은 40MW를 초과해야 함

\* 발전사업 40MW 초과요건 : 154kV 이상 계통에 접속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하기 위함

- 지자체가 입지발굴, 수용성 확보, 사업자 공모 및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업이 집적화단지 대상

- 사업 계획단계(발전사업허가전)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

- 발전사업허가후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기여도를 평가\*

\* 사업이 발전사업허가후 또는 인허가 과정(환평 종료 전까지)에서 수용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어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성을 확보한 경우로, 집적화단지 대상인지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수용성 부문 평가시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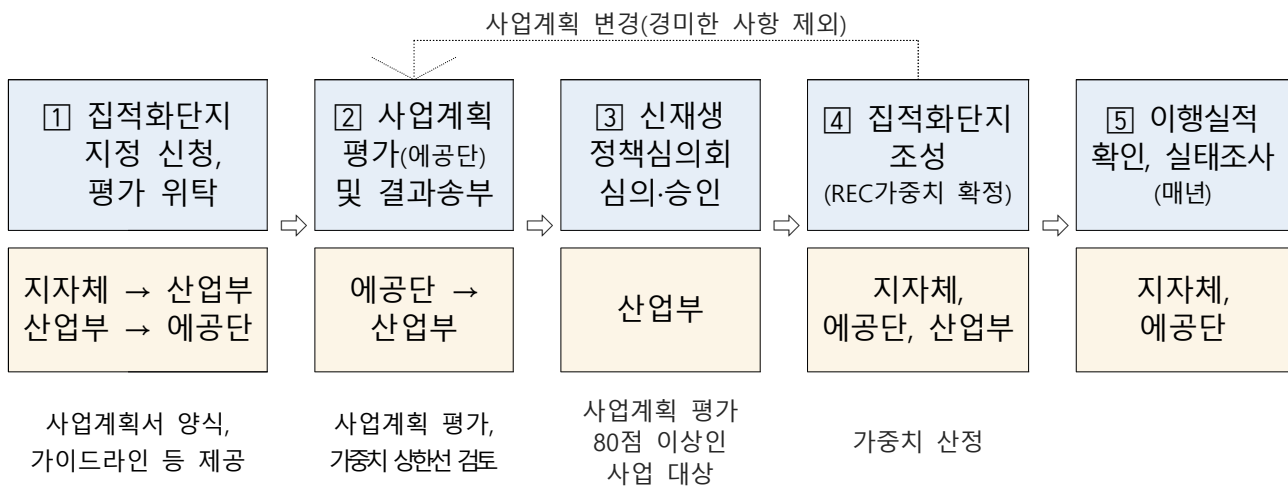
-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,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를 최대 0.1 범위에서 부여 가능

\*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는 지자체에 직접 부여할 계획이며,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별도 회계항목으로 분리하여 집행(지자체주도형 REC 관련 세부사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후 안내할 계획)

## □ 집적화단지 근거법령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
- 「신·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·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(산업부 고시)

## □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



## 2. 집적화단지 요건

### □ 사업의 실시능력(입지의 적절성,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)

- 집적화단지 입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, 공기업·공공기관·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 발굴
  - \* 지자체의 입지 자체발굴 기준: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태양광·풍력발전 등에 적합한 입지인지 여부, 관련 규제 저촉 여부 및 환경성 등을 확인하여 입지를 정한 경우
  - \* 풍력의 경우 후보지역 발굴시 정부가 구축한 풍력입지 정보도 활용
- 후보지역에서 해당 신재생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
  - \* 타법상 개발제한여부 확인, 관계 행정기관과 인허가 사전협의 및 실행노력 등 포함

#### <집적화단지 고시 제4조(입지 요건) >

1. 태양광·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
2. 전원개발행위가 가능할 것
3.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
4.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
5. 신·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

-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·체계적으로 수립
-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인허가 추진일정 수립
  - \* 해당 지자체가 권한을 보유한 인허가의 추진일정 및 협조계획 포함

### □ 지자체의 수용성·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

-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집적화단지 사업 관련 지역 주민·어민 등 핵심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

- 민관협의회 및 관련 실무회의 다수 개최를 통해 사업계획상의 입지 후보지역, 사업계획, 지역 상생방안, 이익공유 방안 공유 및 의견수렴
- 홈페이지,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계획을 공람하고,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
- 사업 관련 환경성 문제에 대한 사전·사후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·이행하고, 관련 내용을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유
  - \* 집적화단지 신청 전 환경입지컨설팅, 산림이용컨설팅 등 관계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전입지컨설팅 수행 필요

## □ 발전단지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

- 집적화단지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계통 연계 방안 수립
  - \* 한전과 기존 전력계통 활용방안 등 검토·협의, 안전성·경제성 등을 고려한 신규 전력계통 구축 계획 등
- 집적화단지 사업 관련하여 송·변전설비를 건설할 경우 경과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방안 및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
- 공동접속설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(해상풍력)
-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최적의 시설·배치계획과 체계적인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 계획 등 수립

## □ 이익공유 방안

-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지원에 따른 수익 활용방안 수립
  - \* 사업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활용
  - \* 수익 활용방안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논의하며, 집적화단지 지정 후 운영 과정에서 민관협의회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(변경내용 산업부 보고 要)
-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수익 활용방안 수립

### 3.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평가

#### □ 집적화단지 신청 및 평가절차

-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자체는 신청요건을 이행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부와 사전 협의 후 공문 및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
  - \* 사업계획서 양식 별첨 서식 참고
  - \* 제출서류 : 집적화단지 실시기관 신청서 및 첨부서류(집적화단지 고시 별지 제1호) 원본, 사업계획서 사본 10부
- 산업부는 지자체의 신청공문을 접수하면 이를 검토하고 전담기관(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)에 평가 위탁
- 전담기관은 평가 위탁받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중 누락된 사안이 있는지 검토하고,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지자체에 보완 요청
  - \* 지자체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제출서류 등 사본 20부를 전담기관에 제출
- 전담기관은 해당 발전원의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,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
  - \* 전담기관은 평가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평가 실시(사업계획 검토 기한은 2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), 지자체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서 제외
  - \* 지자체는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장에 이의신청 가능(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)
- 전담기관은 평가를 최종 완료한 때에 그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하고, 산업부는 평가점수가 80점을 넘는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에 상정하여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 결정
  - \* 평가점수 산정: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로 산술평균,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함
-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지정 시 관련 내용 공고



## □ 집적화단지 평가 기준

- 집적화단지 조성(입지발굴, 수용성 확보, 사업자 공모,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)을 위한 지자체의 기여도를 평가
- 수용성 확보는 집적화단지의 필수(기본) 조건이며, 지자체가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사업은 집적화단지 대상이 아님
- 지자체의 입지발굴, 사업자 공모, 수용성 확보,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배점 설정(붙임 참고)

### < 주요 평가사항(안) >

평가부문(100점)	주요 평가사항
<b>사업의 실시능력(30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계획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입지의 적정성(풍황조건, 규제 저촉여부, 환경성 문제 여부 등), 사업계획(일정)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등 / 인허가 일정의 적정성,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여부 등</li> </ul> </li> <li>· 지자체 역할(입지발굴 등), 추진과정상 지자체 기여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입지발굴: 지자체 예산으로 풍황, 규제 등 확인·검토하여 입지 선정</li> <li>* 기여도 예시: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추진여부 불투명 → 지자체 주도로 수용성 확보(주민 설득, 설명회 개최, 민관협의회 구성) 등을 통해 사업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
<b>안정적 전력공급 계획(20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역내 전력계통 확보 가능여부, 계통(공용망) 신규 구축·보강, 변전소 건설 등 한전과 협의 및 적기 실행을 위한 방안 마련 여부</li> <li>· 공동접속설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(해상풍력), 송·변전설비 경과지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및 지자체 역할 등</li> </ul>
<b>수용성·환경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(30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, 수용성 확보내용의 적정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민관협의회 구성의 대표성, 논의사항의 구체성,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 반영 등</li> </ul> </li> <li>· 환경성 확보를 위한 사전·사후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전입지컨설팅(환경부, 산림청 등) 결과서 내용 반영,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, 건설·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계획 등</li> </ul> </li> </ul>
<b>이익공유 방안(20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자체 주도형 REC 가중치 수익 활용방안의 구체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업지역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신재생 공급 확대, 산업생태계 강화, 사업관련 농·수산업 종사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, 사업지역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개선 등</li> </ul> </li> <li>※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는 준공단계에서 확정, 수익 사용전 산업부 협의 요</li> </ul>

□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(최대 0.1) 평가 단계

- 1단계로 사업계획 평가시 가중치 상한선(최대치)을 설정하고,
  - \* 집적화단지내 2개 이상의 발전사업 추진시 REC 가중치는 사업별로 각각 평가·부여
- 2단계로 준공시점(RPS 설비확인)에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여부에 따라 가중치 확정

<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부여 기준(안) >

평가 항목	가중치
○ 지역주민·어민 등 수용성 확보(민간사업자 입지발굴 사업 포함) ※ 집적화단지 기본조건, 지자체의 수용성 확보 노력 증점 평가	0.04
○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(자체예산으로 풍황, 규제 등 확인·검토)	0.02
○ 사업자 공모 계획 有(공모조건은 추후 산업부 협의 要)	0.01
○ 사업기간 * 발전원별 기준 기간보다 빠른 경우 0.03, 같은 경우 0.02, 지연시 0.01	0.01~0.03
<b>합 계</b>	<b>최대 0.10</b>

\* 발전원별 기준기간 : 발전사업허가~준공기간 기준으로 현재 RPS에 등록된 태양광, 육·해상풍력 설비의 사업추진기간, 인허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계획

## 4. 집적화단지 운영

### □ 집적화단지 지정 및 사업의 시행

-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시행을 총괄함
- 지자체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업 진행사항을 공유하고, 지속적으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
- 집적화단지 사업은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, 실시계획 수립·승인 절차는 동 법령상 규정에 따름
-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「신·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·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 제1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
-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년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
  - 사업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행 실적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산업부에 제출해야 함(사업계획의 일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가능)

### □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

- 집적화단지 지정 후 일정 조건\*에 해당할 경우,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여부를 심의하여 해제 가능

\* 집적화단지 고시 제14조 및 제17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,
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
-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
-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적화단지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
- 천재지변, 실태조사 결과 등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

## 5. 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

※ 지자체에서 집적화단지를 위해 이미 구성·운영중인 민관협의회는 동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함

### □ 기본 원칙

-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자체(실시기관)가 주도적으로 수용성·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민관협의회는 민주성, 공정성, 투명성, 과학성,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구성·운영
- 사업 계획 초기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
  - \*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입장 등을 구체화하고 조율하여 사전에 잠재된 갈등 요소들을 표면화·정리, 사업 정보 공유 → 수용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
-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

### □ 위원 구성

- 민관협의회는 정부위원, 민간위원,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2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정부위원은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(광역, 기초)의 장이 추천한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
  - \* 에너지산업, 환경, 해양수산 등 관련 부서가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

- 필요시 실시기관장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(산업부, 해수부 등) 소속 공무원 및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관인으로 배석 가능(중앙부처 공무원, 전담기관 관계자는 의결권 없음)
- 민간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(지역 주민, 어민 등)로 구성
  - 이해당사자(단체)의 수가 많을 경우 대표성 있는 단체로 민간위원 구성
  - 해상풍력의 경우 사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「수산업 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,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, 그 외에 업종을 대표하는 어업인 단체 등 포함 가능
    - \* 이 경우 수협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위촉
- 공익위원은 해당 발전사업(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 등),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
  - \* 공익위원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내용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여, 논의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의 역할 담당 가능
- 공익위원은 전체위원의 20% 이상으로 구성하고,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
- 민간위원과 민간위원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공익위원의 합이 전체위원의 50% 이상이 되도록 구성

## □ 위원장 및 위원 임기 등

-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, 사업에 따라 단독(1명) 또는 공동(2명 이상)으로 구성 가능
-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
- 사업계획 관련 사항\*에 대한 협의, 사업시행자 공모 등을 수행할 때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

\* 입지 후보지역,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(지자체 주도형 REC 수익 활용방안 등), 개발입지 환경,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지침 제5조 관련)

- 위원장은 민관협의회 및 집적화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

-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민관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## □ 전문위원회 등 구성·운영

-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, 지역별·분야별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민관협의회 하위에 지역위원회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가능

- 상기 위원회는 민관협의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민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전문가, 지역주민,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 가능

\* 지역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참고하여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되, 집적화단지 관련 의결권 행사는 민관협의회 개최 시 민관협의회 구성원으로 한정

## □ 회의 운영

-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

-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(문서, 문자 메시지, 전자우편 포함)으로 통지
  - \*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들 수 있으며, 회의개최 통지 일정은 지자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사람이 의제 이외에 불필요한 발언·행동 등으로 의사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발언·행동을 중지시키거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장조치 가능
-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,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
## □ 협의 내용

-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에 관한 사항
- 사업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율
- 발전사업 관련 환경 영향 검토 및 조치 방안
- 인허가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지자체 계획
- 계통연계를 위한 송·변전설비 건설시 경과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사항 및 사업추진 기간중 수용성 확보사항
- 사업시행자 공모 조건 등 계획
-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연계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활용방안 및 지역 이익공유 방안
-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등

## □ 정보 관리

- 민관협의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(별지서식 참고), 위원장 및 위원이 검토한 후 확정
- 민관협의회 회의 일정, 안건 및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
- \* 위원장은 정보공개가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



평가 부문	주요 평가사항
<p>사업의 실시능력 (30점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를 발굴하고,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지자체의 개발입지 자체 발굴 여부, 입지의 풍황조건, 규제 저촉여부, 환경성 문제 여부 등 검토의 적정성,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역할·기여도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정도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마련되었는가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용성·환경성 등 사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구체성(추진과정상 지자체의 기여도), 단지 지정 후 속도감 있는 단지개발 실현 가능성(사업계획의 체계성, 구체성 등), 집적화단지 지정 필요성 정도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업시행자 선정방안, 수용성·환경성 확보방안, 이익공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·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을 고려하였는가</li> <li>○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적기실행이 가능한가</li> <li>○ 개발입지 활용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인허가 사전협의 및 실행노력은 적절한가</li> <li>○ 개발입지 활용을 위한 인허가 추진일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</li> </ul>
<p>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(20점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력계통 용량확보 및 계통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기실행이 가능한가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존 전력계통 활용방안 검토협의 결과, 신규 전력계통 구축 계획 등 (경제성·안전성 등 고려)</li> </ul> </li> <li>○ 송·변전설비 경과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및 지자체 역할, 공동접속설비 구축 계획(해상풍력)이 적정한가</li> <li>○ 안정적이고 효율적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</li> <li>○ 유지보수 점검계획 및 위험대비 관리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집적화단지 내 설치 시설의 고장, 정지, 화재 및 자연재해 등 발생 시 상황별 대처방안 등</li> </ul> </li> </ul>
<p>수용성·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(30점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 및 지역공동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였는가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특정 계층(단체)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민관협의회 구성하였는지 여부,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구성 범위의 적정성 및 대표성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상의 입지 후보지역,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의 수용성을 확인하였는가</li> <li>○ 홈페이지,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</li> <li>○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·사후 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</li> <li>○ 민관협의회를 통해 개발입지의 환경성 확보계획을 공유하고 적정성 및 실현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실시하였는가</li> </ul>
<p>이익공유 방안 (20점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지원에 따른 수익을 사업지역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활용되는가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업관련 농업·수산업 등 종사자 업종전환 또는 재취업(창업) 역량강화 지원, 사업지역의 사회 기반시설 및 복지 개선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방안은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가</li> </ul>

## 민관협의회 회의록

회의명	
개최 일시	0000년 00월 00일 (요일), 시작시간~종료시간
개최 장소	
참석자	참석대상자: 00명 참석자: 00명, 불참자 00명  참석자 명단:
회의 내용	< 보고안건 > ○ 발언자 이름: 발언 내용(핵심 요지) - -  < 심의안건 > ○ 발언자 이름: 발언내용(핵심 요지) - -  < 의결안건 > ○ 발언자 이름: 발언내용(핵심 요지) - -

※ 집적화단지 관련 문의처

기관	부서명	연락처	비고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	신재생에너지정책실	052-920-0683	총괄
	태양광사업실	052-920-0823, 0824	태양광
	풍력사업실	052-920-0747, 0750	풍력
	신재생에너지산업실	052-920-0733	연료전지
	신재생에너지보급실	052-920-0781	기타 신재생
산업통상자원부	재생에너지보급과	044-203-5382, 5387	집적화단지 제도 전반